

2019년 운영성과 보고서

2020. 2

 상주시 옴부즈맨

이 보고서는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의거 매년
운영상황을 시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를 발간하며

상주시 옴부즈맨 제도가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6년 8월1일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의 간극을 메우면서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찾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발간한 「2019년 옴부즈맨 운영성과 보고서」는 도로,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6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공정한 처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2 월

상주시 옴부즈맨 강 석 도



C · O · N · T · E · N · T · S

■ 음부즈맨 설치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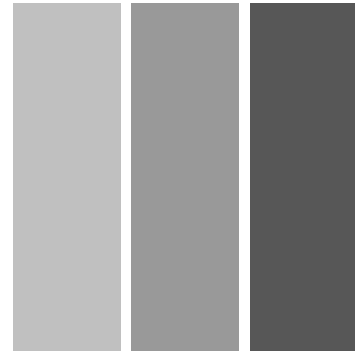
I. 음부즈맨 운영 현황	5
1. 도입 배경 / 5	
2. 설치 및 운영 근거 / 6	
3. 구성현황 / 6	
4. 주요 기능 및 직무 / 7	
II. 음부즈맨 운영 성과	8
1. 개요 / 8	
2. 고충민원 처리 유형 / 8	
3.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9	
4.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 11	
5. 고충 민원 처리 세부 사례 / 15	
6. 상담 민원 처리 세부 사례 / 48	

■ 제도 홍보

I. 음부즈맨 활동	63
II. 음부즈맨 제도 홍보	68
III. 언론 보도 등	70

■ 부록

I. 연혁	73
II. 상주시 음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4
III. 상주시 음부즈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2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I. 옴부즈맨 운영 현황

-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II. 옴부즈맨 운영 성과

- 고충 상담 민원사례

상주시 옴부즈맨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I. 옴부즈맨 운영 현황

1. 도입 배경

가. 지방자치시대의 신뢰받는 행정구현 일환

- 옴부즈맨(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를 뜻하고, 영국 · 미국에서는 「민정관(民情官) · 호민관(護民官)」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 옴부즈맨제도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제도로써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 · 공정하게 조사 · 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행정 옴부즈맨 제도의 일환으로 1994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각종 민원의 상담 · 안내, 민원종결 기능 등을 행한다.
- 상주시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강화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자
- 상주시의회 의원발의로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5.10.02.)하여 상주시 옴부즈맨을 위촉(2016.7.11.)하고, 2016년 8월 1일부터 상주시 옴부즈맨 사무실을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중앙정부의 설치 권장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고충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의 설치 · 운영을 권장

2. 설치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구성현황

가. 구성 및 지위

- 1) 지 위 : 상주시 소속으로 직무수행관련 독립성 보장
- 2) 임 기 :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3) 위촉방식 : 공개 모집 후 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
- 4) 위 촉 일 : 2016. 7. 11.
- 5) 상주시 옴부즈맨

옴부즈맨		주요경력	위촉기간
	강석도	상주시청 청정환경팀장(과장)	초대 2016.8.1~ 2018.7.31
		경제기업과장 동문동장	2대 2018.8.1~ 2020.7.31

나. 자격 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주요 기능 및 직무

가. 직무 관할 범위

-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나. 직무 및 권한

-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 옴부즈맨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중재
-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정·중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맨에게 요구한 사건의 조사

다. 처리 제외 대상

- 시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제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맨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사항

II. 옴부즈맨 운영 성과

1. 개요

가. 관련근거

-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운영시간

· 주 5회 운영(월~ 금요일) 10:00 ~ 16:00

다. 운영장소 : 옴부즈맨 사무실(시 본청 3층)

라. 지원인력 : 1명

마. 직무 및 권한

-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 집단민원 조정·중재,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강구 권고
- 반복적 고질적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정·중재 등

2. 고충민원 처리 유형

가. 시정권고 : 조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의견표명 : 조사 결과,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정·중재 : 옴부즈맨의 권고 이전 옴부즈맨의 중재에 따라 해결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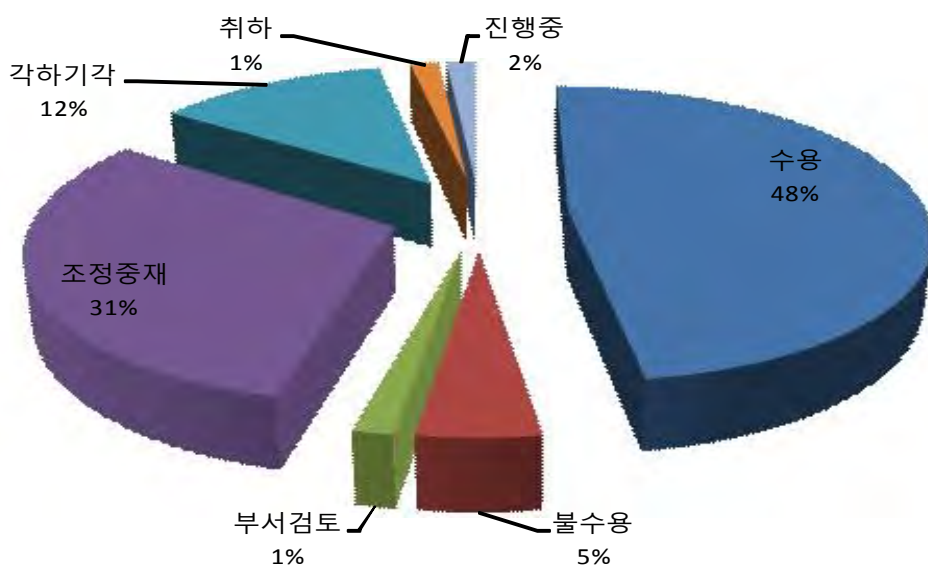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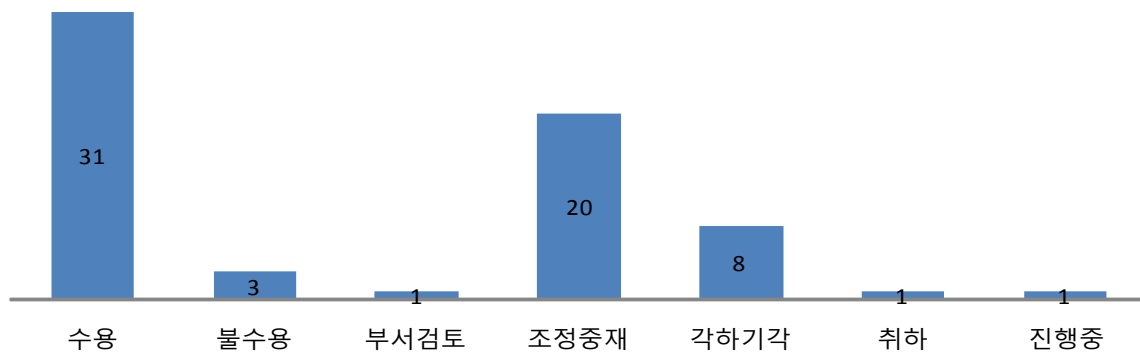
라. 조사제외 : 사실관계 검토 결과, 조례에 따라 조사를 제외하는 경우

3. 민원 접수 · 처리 현황

2019년 민원 접수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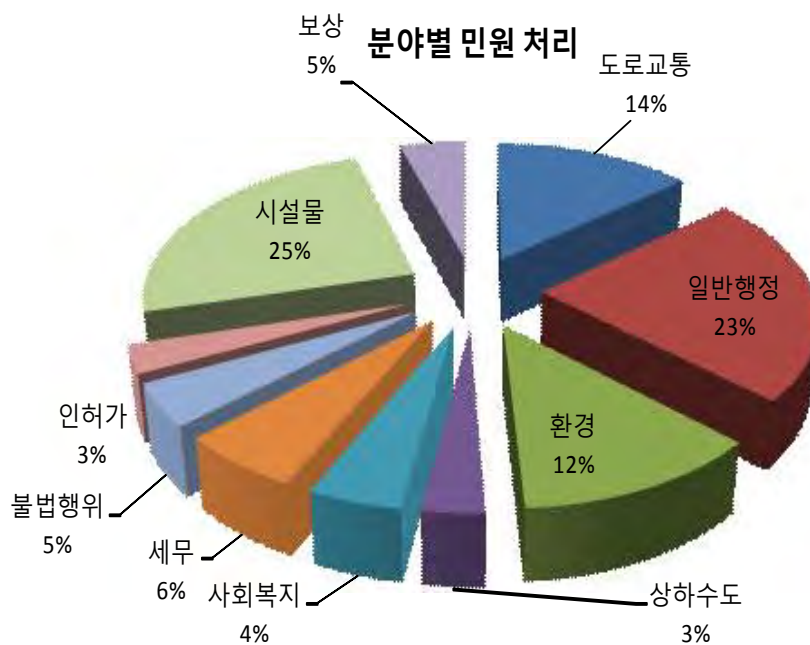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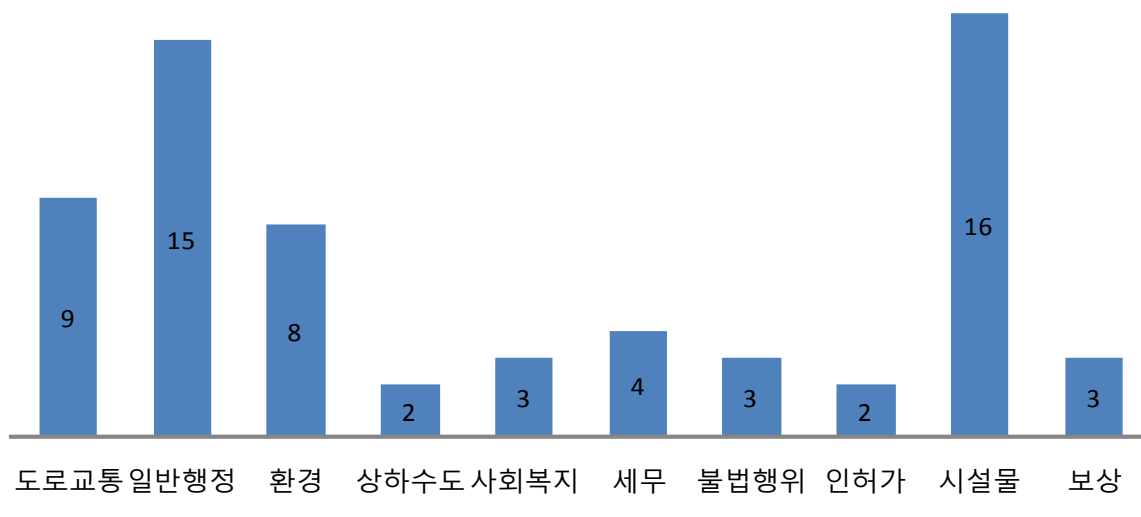
접수 건수	고충민원 처리 현황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조정 중재	각하 기각	취하	진행중
	계	수용	불수용	부 서 검토중				
65	35	31	3	1	20	8	1	1

고충민원 처리현황



분야별 민원 접수현황

분야	도로 교통	일반 행정	환경	상하 수도	사회 복지	세무	불법 행위	인허가	시설물	보상	계
건수	9	15	8	2	3	4	3	2	16	3	65



4.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고충민원 접수내역

연번	민원요지	관련부서	처리 유형	비고
1	파손된 도로 재포장 요청	계림동	조정중재	완결
2	하우스 시설 내 가설건축물 신고	민원토지과	조정중재	완결
3	농로훼손으로 인한 농기계 통행 불편 해소.	개발지원과 합창읍	수용	완결
4	축사신축으로 일조량 침해 조치요구.	건축과	조정중재	완결
5	고사목 제거.	동성동	수용	완결
6	토지용도 폐지후 매입요청.	건설과	수용	완결
7	토지 원소유자에 환매조치.	건설과	수용	완결
8	공터 주차 및 생활쓰레기 수거.	환경관리과	수용	완결
9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조치	도시과	수용	완결
10	수로관 공사 재시공 요청	청리면	수용	완결
11	도로변 은행나무 제거	산림녹지과 동성동	수용	완결
12	태양광 공사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요청	환경관리과	조정중재	완결
13	기배수로 밑바닥공사 및 폭 조정 요청	건설과	수용	완결
14	지속적 토지경작 요청	민원토지과 상주향교	조정중재	완결
15	공유재산 용도폐지 요구	산림녹지과 회계과	수용	완결

연번	민원요지	관련부서	처리 유형	비고
16	시유지 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 요구	건축과	조정중재	완결
17	계사 건축으로 인한 농사피해	건축과	조정중재	완결
18	지렁이 사육시설로 인한 악취 농사피해 개선요구	환경관리과	조정중재	완결
19	진입로 개설	건설과 동문동	수용	완결
20	지목변경 요청	도시과. 민원토지과	수용	완결
21	상수도 배수관 설치	상하수도 사업소	수용	완결
22	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토지 원상복구	건설과	수용	완결
23	초소 철거요청	교통 에너지과	수용	완결
24	남산공원 등산로 계단보수 요청	산림녹지과	수용	완결
25	가축분뇨 노상방치	환경관리과	수용	완결
26	토지침범 에 따른 시정조치 및 구거지 매각	농어촌공사 도시과 국민권익위	수용	완결
27	과속 방지턱 설치	건설과	수용	완결
28	교통통제 조속히 해결	상하수도 사업소	조정중재	완결
29	지상 통행로 확보 콘크리트 포장요청	낙동면	수용	완결
30	불법건축물 구제 및 지목변경 확인	화북면 민원토지과	불수용	완결
31	마을회관 보조금 환수 부당	새마을체육 국민권익위	수용	완결
32	계사로 인한 악취 건축허가 취소요청	건축과 환경관리과	기각	완결
33	음식물류 종량제 확대 실시	환경관리과	조정중재	완결
34	왕산공원 옆 피해 목 제거요청	산림녹지과	조정중재	완결

연번	민원요지	관련부서	처리 유형	비고
35	식당 음식냄새 와 소음방지 대책요구	보건위생과	조정중재	완결
36	배수시설 없어 논으로 하수 유입조치	민원토지과	조정중재	완결
37	도로 철 대문 설치로 도로통행 막음 조치요	건설과 북문동	조정중재 (진행중)	진행중
38	공장 설치로 꽃감 가공업 피해 예상 조치요	경제기업과	조정중재	완결
39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른 자투리땅 매입요청	도시과	수용	완결
40	가로등 (반사경) 설치 요청	도시과 건설과	수용	완결
41	태양광 설치허가 조속 해결	민원토지과 도시과	조정중재 (부서검토)	부서 검토
42	소로 미 개설 공사 추진 촉구	도시과	수용	완결
43	쓰레기 배출 장소 변경 요청	동성동	기각	완결



상담민원 접수 현황

연번	민원요지	관련부서	처리 유형	비고
1	지적 장애인 상주시 생활시설 입소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조정중재	완결
2	농산물 택배 배송 정지로 불편함 해소	유통 마케팅과	조정중재	완결
3	조상 땅 찾기 확인	민원토지과	수용	완결
4	지붕 개량공사 요청.	사별면	수용	완결
5	토지합병 및 도로부지 매입 요청	민원토지과 건설과	기각	완결
6	호적에 등재된 본 정정	민원토지과	불수용	완결

연번	민원요지	관련부서	처리 유형	비고
7	등산로 정비에 따른 세금감면	세정과	취하	완결
8	불법보조사업자 조치	농업정책과	기각	완결
9	노인정 건립 문의	새마을과. 동문동	수용	완결
10	공사장 사고 해결요청	상하수도 사업소	조정중재	완결
11	도로 기능상실 용폐 후 매각 요청	건설과	기각	완결
12	환경개선 분담금 부과 부당	환경관리과 세정과	기각	완결
13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부과 구제 요청	환경관리과	수용	완결
14	수도요금 조정 요청	상하수도 사업소	수용	완결
15	벌 변에 의한 일상생활 불편 조치요망	은척면. 축산과. 민원토지과	조정중재	완결
16	사망에 따른 토지매매 확인 요청	토지민원과	기각	완결
17	영구 임대 아파트 퇴거조치 구제요청	LH공사	기각	완결
18	근로 장려금 지급 조사 요청	사회복지과	수용	완결
19	향토 문화재(석불입상) 자료 찾기	문화예술과	수용	완결
20	게이트볼 구장 건립 요청	새마을 체육과	불수용	완결
21	수도요금 과다부과 확인	민원토지과	수용	완결
22	전입 지원금 지급 요청	미래전략 추진단	수용	완결

5. 고충민원 처리 세부사례

1

파손된 도로 재포장

■ 민원 요지

- 수년전에 포장한 진입로가 파손되어 재포장을 하고자 하니 주택을 지을 당시 진입로를 지목은 도로로 변경 하였으나 소유권은 건축당시 소유자로 되어 있어 재포장에 따른 사용 승낙을 하지 아니하니 포장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당초 답으로 1991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이 있는 부분은 지목변경(대지)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자를 변경하고 도로 부분은 지목만 변경 후 소유권은 원소유자 명의로 있는바
- 개인사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포장이 불가능한 상태로 안내 (원소유자의 등기사용승낙서 징구 후 포장가능)

2

하우스시설 내 가설건축물 신고

■ 민원 요지

- 2010년부터 성동동 XXX-XX번지에서 오이를 4000m² 경작하고 있습니다.

오이농사를 경작하기 위하여 하우스 안에 조립식 판넬로 농업관련 창고 및 농막(썬터)37.5m²를 지어 사용하여 오던 중 관할 동성동사무소에서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 통보를 받았음.

썬터는 매일 오이작업(6월말)을 하는 현실로 가설건축물로 양성화 또는 이행 강제금 납부로 가능한지 등 해결 방법을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발생원인
 - 2018. 12.17 불법 건축물 신고건 (진정)
 - 관할 동성동사무소 행정 절차법에 따라 2차례 걸쳐 계고 후
 - 2019. 4. 17.(건축과)로 위반 건축물로 적발보고
- 위반사항
 - 농지법(개발제한구역 특별 조치법)에서 정한 비닐하우스 내 농지전용은 30㎡까지 임시시설을 설치가능(39.5㎡→9.5㎡)
 - 건물은 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고 없이 무단 건축 - 불법건축물)
- 조치
 - 농지과다 점용부분 사용용도와 동일하게 분리(농막 18.3㎡, 저온저장고 19.9㎡)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통보 (2019. 12. 15.)

3

농로훼손으로 인한 통행 불편 해소

민원 요지

- 선대에게 물려받은 토지 함창읍 대조리 전XX. XX번지 경작하여 오고 있던 중 인근 토지경작자 (전XX-X. XX-X. XX)가 농로를 파고들어와 농기계통행이 어려워 경작 하기에 애로점이 많으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경작자와 협의가 되지 않고 토지 사용료 요구)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개발지원과 시설지원 팀장 *** 함창읍 건설팀장 *** 협의
- 현장 확인 후 개발지원과에 측량예산 764,500원 확보 후
- 4. 18. 측량 기준 농로 부분 경계완료 복구.

■ 민원 요지

- 함창읍 오사리 XXX-X번지 축사 신축에 있어 악취냄새가 심하고 토지 값이 떨어지므로 축사반대 및 축사건물에 의한 민원인 토지의 일조량 부족으로 농사가 어려워 피해를 주어 시정 요구하였으나 법적 하자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중이니 조치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건축과 건축허가 팀장 ***, ***, 협의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4일 허가 (건축면적1927.5m² 건폐율. 용적율 47.76%) 공사 중 으로
- 2019년2월7일 민원인과 담당자 현장 확인 민원인 에게 피해에 따른 보상을 주기로 원만히 협의되어 종결.

■ 민원 요지

- 저는 고령(90세) 으로 남편은 수년전부터 건강문제로 요양원에 가있고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 살고해서 혼자서 집을 지키며 살고 있는 중 집안에 오래된 감나무 2그루가 고사로 방치되어 바람이 불면 집으로 넘어져 지붕파손 및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으니 고사목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동성동장 협의 이웃동민을 동원 제거토록 하였으나
- 감나무가 오래된 고목으로 고사하여 일반인이 처리할 수 없어 소방서(119) 협조로 2019. 2. 22 제거완료

민원 요지

- 중동면 죽암리XXX-X 유지992㎡은 인근 214-2(답), 212(답) 등 2500여평 본인소유답에 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부 때부터 경작하여 오던 토지를 1985년 특별조치법으로 상주군으로 이전한 유지로 당시 특별조치법 보증인도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나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친인척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없이 이후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어 20여년 전부터 감나무를 심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매입 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건설과 농지팀장 *** 협의
- 고충민원 처리 추진계획서 제출 요구 (2019.2.21.)
- 2019.3.8. 요구서 답신 (건설과→ 옴부즈맨실 2019.3.8.)
-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시 점유사실 등 제반사항 확인 후
- 관련 법령에 따라 용도폐지 추진이 가능함 통보(2019.3.6)

민원 요지

-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XXX-X(전175㎡)은 강창교(현 잠수교) 확장계획에 따라 2008년경 상주시에 매입한 토지로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계획이 무산되어 공사착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근에서 매운탕 장사를 하면서 인근 토지를 경작 하는 저로서 꼭 필요한 토지인바 사업이 무산 되었으면 원소유자에 환매 등의 조치를 하여주시길 바람.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건설과 토목팀장 *** 협의
- 상주시 읍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조사방법)에 규정에 의거 건설과장에게 추진계획서 제출 통보(2019.2.2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제91조(환매권)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의뢰(3월중),
- 환매계약 처리 완료.(5. 9) (환매금액 : 3,552천원)

8

공터 주차 및 생활쓰레기 수거

민원 요지

- 2019.3.5 생활불편신고 후 읍부즈맨실 접수건 으로 남원동 OO시장 OO식육식당뒤편 공터 및 OO복집 옆 건물에 약장수가 영업 하면서 공터에 다량의 차량을 주차함으로 인하여 주차불편 과 유리병 등 생활쓰레기가 쌓이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시정 조치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환경관리과 청소팀장 *** 협의
- 현장 확인 후 청소담당 인부동원 폐기물 처리 완료 (2019.3.5)

9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조치

민원 요지

- 계림2길 팔레스 모텔 앞 위치한 배 오토바이가 영업을 하면서 도로 무단점용 및 사고 오토바이 무단방치.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되며 불법 가설건축물 방치 등으로 피해를 주민들이 입고 있으니 조치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기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사안으로
- 도시과 노상 적치물 위반 건으로
- 2019. 3. 27 상주경찰서에 고발조치

■ 민원 요지

- 청리면 읍리 XXX번지(답2780m²) 경작중 으로 2018년12월에 수로관 공사를 청리면에서 임의로 실시 수로관이 S자 불규칙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국고 손실도 되고 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주어 농사짓는데 불편하니 재시공 해서 농사짓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청리면 담당자 *** 협의
- 공사개요:
 - 위치 : 청리 읍2리(신상들) 배수로 정비
 - 공사기간 : 2018. 11. 9. ~ 2018. 12. 10 까지
 - 공사내역 : 수로관설치(400C ~ 600C) L=418.0m 콘크리트 포장
B=3.0m. L=90.0m 공사완료
 - 배수로 재시공 완료 (2019. 4. 9.)



(작업전)



(작업후)

■ 민원 요지

- 성하동 OO식당 앞 은행나무가 가을에서 겨울까지 낙엽이 쌓이고 은행열매가 떨어져 주변에 악취를 풍겨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도로통행에 방해되고 위생에도 문제가 많으니 은행나무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산림녹지과 담당자 *** 협의.
- 도로변 피해목 제거사업 관련 예산재배정(시 → 동성동 1,500천원)
- 2019. 4. 8. 은행나무 제거완료.



(작업전)



(작업후)

■ 민원 요지

- 상주시 내서면 평지3리 소재지 일대에서 태양광개발공사를 하면서 현장 진입로가 하천으로 덤프트럭이 왕래하면서 흙탕물이 발생하고 공사로 인한 주변 도로에 흙 자갈 등이 떨어져 환경문제가 발생 하므로 조치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환경관리과 담당 *** 현장 확인(2019. 3. 27)
- 사용정지명령발부(2019. 4. 3) 위반시 1년 이하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벌금 부과가능 고지통보
- 토사 이동 없이 완공토록 협의 완료.

■ 민원 요지

- 중덕동 낙상동 경계지점에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중덕동 XX번지(답) .XX번지(답)을 가로지르는 들판 배수로를 정비 하면서 기정비한 아래 부분의 폭은 3.8m 윗부분은 약5.0m로 물이 부족할 당시 만들어진 배수로를 좁혀서 공사를 함이 타당함에도 도리어 넓혀 공사를 계획하고 기배수로 공사를 시행할 부분 밑바닥을 시멘트로 하지 않고 맨땅으로 해서 풀이 자라 유수에도 지장이 있으며 배수가 되지 않고 있으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건설과 농지담당 *** 협의
- 현장 확인 (2019.03.27) 추가 공사시 맨땅부분은 시멘트로 공사토록 하고
- 기 정비한 공사는 계림동에서 시행한 공사로
- 이후 재정비 공사 시 배수로 폭 확보.

■ 민원 요지

- 상주시 남산1길 XX-XX번지 자택 앞 토지를 몇 십년간 경작하였는데 새로 이사 온 이웃사람이 상주향교토지로 상주향교에 토지세를 낸다며 경작을 못하게 하고 있으며 토지측량을 했다면 민원인 자택마당까지 말뚝을 설치 장애2급인 민원인으로써 너무 억울하고 지속적인 토지경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자택 옆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치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민원토지과 담당 ***, 상주향교 사무국장 ***
- 2019.4.3 현장 확인 낙양동XXX-X번지(전)경작권은 민원인과 아이들이 그리는 세상(원장 ***)과 상주향교에서 일부분 중복 사용허가
- 쌍방간 협의결과 원경작 민원인에게 사용경작 양보하고 기 심겨진 감나무 유실수는 이전하고 교통에 방해되는 주차도 원만히 협의 종결.



(현장 중재 활동)

민원 요지

- 본인은 외답동 농공단지에서 기업체(OO철공소)를 선조때 부터 운영하고 있던 중 외답동XXX(전)1598㎡를 2010.3월경에 구입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협소하고 다른 업종을 하기 위하여 설계 하던 중 동토지 모서리 부분에 외답동XXX-X 임야44㎡가 상주시 소유로 있어 개발에 지장이 있으니 매각하여 원활한 기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 협의
- 외답동XXX-X(임야)44㎡은 항공사진 및 현지 조사한바 전의 상태로 사용되어 왔으며 산림경영의 활용목적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산림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없는 재산임.
- 본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용도폐지
- 회계과에 인계 매각 완료(2019.4.11.)

민원 요지

- 상주시 현신동 XXX-X번지 민원인 건물 앞 하천부지를 점용 허가 받았다고 주택지에서 위협하게 벌 을치고 건축을 하고 기존담장을 없애고 묘목을 심는 등 집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 이제는 가족들 주소지를 옮겨 시유지 땅을 자기 땅 이라며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 하고 있으니 조치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권리. 의무는 *** (양도인)의자 *** (양수인)으로 2015.11.10. 이전(상속) 허가 사용 중으로
- 현신동XXX-X번지(***)와 경계선 측량 후 개인합의 토록 통지 (2019.4.9.)

17

계사 건축으로 인한 농사피해

■ 민원 요지

- 함창읍 오사리에 거주하면서 오사리 XXX(답) 3775m²를 1994.6.2 오사들 경지 완료 후 계속 경작하여 오던 중 신흥리에 살고 있는 *** 씨 가 오사리 XXX-X의 1필지에 계사 및 관리사를 건축하고 방풍막(휼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햇볕이 들지 아니하여 벼 알이 죽정이가 되는 등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건축법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적정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건축과 건축신고 담당 ***, *** 현장 확인 (2019.4.9.)
- 민원인의 방풍막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옹벽 또는 담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며
- 방풍막 피해에 대해 합의로 계사 건물주가 1년에 쌀80kg을 주기로 합의 종결



(위치도)



(현장)

민원 요지

- 상주시 초산동 XXX-X번지 2,579㎡(답)에 지렁이 사육장에 식품 폐기물처리로 인한 악취로 인근에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니 손해배상, 허가취소 또는 냄새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환경관리과 인허가 담당자 ***, *** 협의
2019.4.15 현장 확인
- 오니류 지렁이 먹이재활용 허가는 행정심판등 기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 적법하게 허가된 시설로 악취 등 발생을 저감하는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계도토록 의견표명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 2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
 - 신고수리조건 미준수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7항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폐기물반입금지” 또는“시설의 폐쇄” 행정처분 통보.
 - 악취발생 최소화 하겠다 약속
 -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검사 의뢰예정
 - 상주시 폐기물 처리업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2019.4.22 ~ 5.21)

■ 민원 요지

- 2014년 상주시로 귀농하여 헌신동XXX번지(동부초등학교 건너편)에 아로니아 재배 하면서 택배차량이 도로에서 진입할 수가 없어 동부초등학교앞 쪽에서 약600m 가량 돌아서 들어오고 돌릴 공간이 없어 나갈 때는 300m 가량은 후진하여 나갑니다. 농산물 출하 및 차량통행에 불편하니 하천부지 도로포장 또는 동부 초등학교 쪽으로 다리를 건립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현장 확인(4.30) 결과 해결방안은
 - 1안) 하천부지 도로개설
 - 2안) 집 앞 회차로 신설
 - 3안) 다리건립. 등 민원인과 3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
- 1안 도로개설은 하천점유자 반대로 어려움
- 3안은 예산 과다와 현실성 낮음
- 민원인과 2안 집 앞 회차로 신설로 합의 하여
- 개발지원과와 예산확보 후 2019. 9. 4 공사실시 완료.



(작업 전)



(작업 후)

민원 요지

- 상주시 서성동 XXX(520㎡) 대지에 공용시설물이 매설되어 시에서 매입요청이 있어 2017.07.26.서성동 XX-X(21㎡)으로 분할 매도한바 시에서 매입한 부지를 현 상황에 맞게 도로로 지목 변경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함으로 53-1대지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니 공부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으니 XX-X(21㎡)를 도로로 조속히 지목변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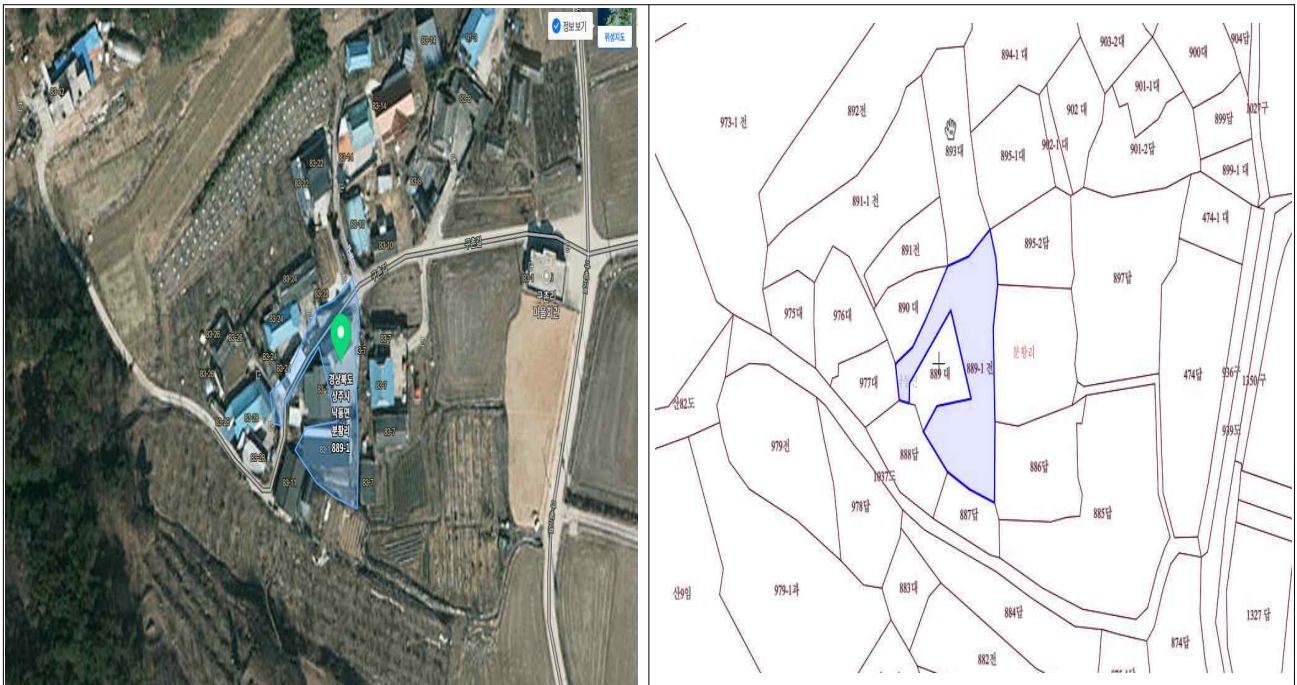
-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민원토지과 지목변경담당 협의
- 도시과에서 민원토지과로 토지이동 신청서 제출 후
- 민원토지과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조사 에 의거
- 2019. 5. 13 지목변경 완료

민원 요지

- 2008년도 축산환경사업소 시설물 증설에 따른 피해 우려지역(낙동면 OO마을 가구수 20)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 상수도 설치를 하여 주기로 약속하여 2015년도에 착공하였으나 수도관이 통과하는 도로 소유자가 사용 승락하지 않아 아직까지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윗마을 10여 가구에는 2년 전 도로 굴착 등의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로 아직까지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고 있으니 공사가 가능한 10여 가구에 라도 공사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시설팀장 *** 협의
- 현황
 -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가 2018. 5. 4 사업비 27,650천원 (배수관 D50mm L=175m) 으로 착공하였으나
 - 공사구간 토지사용 미 승낙으로 2018. 6.12 공사 중지
- 추진과정
 - 기존 사용하는 마을안길 일부가 개인소유지로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임.
 - 주민 간 감정싸움으로 관로매설 반대
 - 공사재개촉구 (반장 등 10가구 2019. 8~ 현재) 미 승낙 토지를 제외한 구간 공사 촉구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2019. 8월)보상(사용료)을 통하여 전 가구 사용공사 요구
- 사업소의견
 - 도로부지 관로를 보상할 경우 관내 전 지역 보상요구 선례가 됨으로 반대
- 읍부즈맨 주도하에 토지소유자 마을대표 등과 여러 차례 협의 설득을 거쳐 토지 사용승락서 를 징구하였으며 2020년3월 공사 착공하시로 합의 종결.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민원 요지

-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XXX번지 전274m² (형 *** 소유)은 84년도부터 저희 모친께서 농사를 지어 오던 토지로 상주시 건설과 에서 상습침수지역 배수관로 확장 등 배수 개선사업 경계지역으로 지주와 상의도 없이 인근토지보다 높은 밭을 평탄작업을 실시하여(밭의 흙을 깎아내어) 자갈밭이 되어 있으니 조속히 원상복구 하여 주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건설과 농지담당 ***, ***** 협의
- 현장 확인 결과 상주시 OO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로 (2016.12.5~2018.3.29.)
- 매립면적(89.7ha)이 방대하여 공사시 현장여건으로 볼 때 맹지를 훼손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 현재는 민원인 토지가 맹지로 주변농사에 피해가 우려되어
- 작물 추수 및 차량통행이 가능한 시기(가을~봄)에 주변토지와 같이 양질의 흙으로 복토기로 하고 합의 종결함 (5. 15.).



 민원 요지

- 2016년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2018년 12월경 폐지하면서 노상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초소를 철거치 아니하여 서성동 XX-X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에 장애물로 작용하여 건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속히 철거요망.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교통에너지과 교통지도담당 *** 협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상주시 물품관리규칙 제14조에 의거 무상 관리전환 승인 후
- 2019년5월31일 초소 철거 완료 .

■ 민원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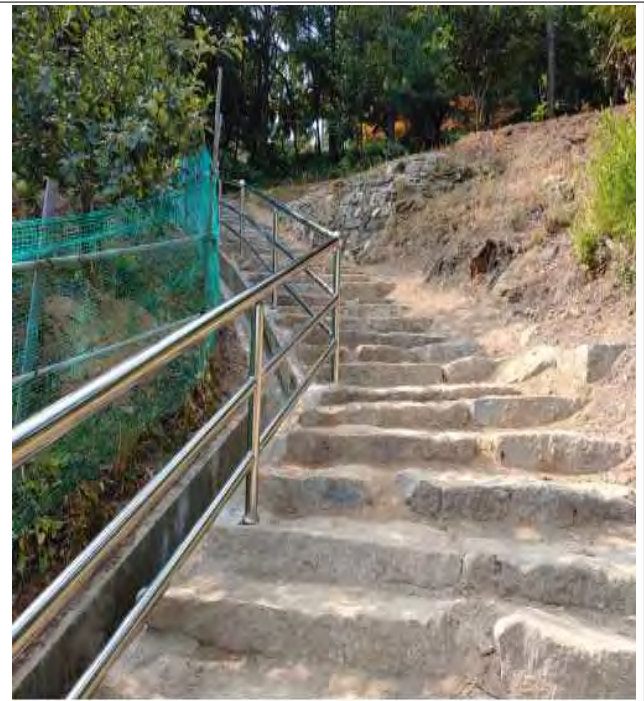
- 상주시 신봉동 소재 OO근린공원내 아이들이 그리는 세상학원 위쪽 돌계단이 설치 한지 오래되어 앞으로 기울어 사고가 자주 발생 특히 겨울철 눈이와 빙판이 될 경우 상당히 위험하니 안전장치를 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산림녹지과 공원녹지담자 *** 현장 확인 (2019.05.28)
- OO근린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돌계단 정비공사 실시
 - .계약일지 : 2019. 5. 28
 - .시공사 : OO건설
 - .공사기간 : 2019. 7.17~ 8.5.
 - .공사금액 : 5.779천원
- 2019. 8. 5 준공



(작업 전)



(작업 후)

■ 민원 요지

- 환경보존관리가 국민의 화두로 4대강 보 문제가 이슈화된 이 시점에 상주보 인근인 상수도 사업소 앞 낙동강 둔치에 수십차의 가축분뇨를 수년전부터 쌓아 썩혀 퇴비로 사용하면서 비닐 등 덮개 없이 노상방치 상태로 두어 썩은 똥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으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환경관리과 수계관리 담당 2019. 5. 29. 현장 확인 결과
- 도남동XXX-X번지 및 XXX번지 상의 퇴비더미 2개소에 발농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퇴비를 야적
- 포크레인을 동원 반듯하게 쌓은 후 우천 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덮개 설치 완료 (2019. 6. 3)



(작업전)



(작업후)

■ 민원 요지

- 4차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현재 본인소유의 토지와 도로 사이에 구거로의 역할을 상실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구거부지(낙양동XXX-XX번지)가 있음.
도로 옆 구거로 인해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상주시와 농어촌공사 상주지사에 구거부지 매각에 관하여 수차례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구거부지는 용도 폐지하여 매각을 하더라도 일부 매각불가 하다하여 건축 할 수 있게 구거부지 매입과 시에서 점유한 시설물을 철거 하여 주기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추진개요

- 2015~ 약3년 간 수차례 농어촌공사에 분할매각 요구
- 2018. 10. 8 고충민원접수(폐구거부지 매각 도시계획시설 이설)
- 2018. 10. 15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등 관계 공무원과 수차례 현장 확인
- 2018. 10. 22 읍부즈맨이 상주시장에게 의견표명.
- 2018. 11.13 농어촌공사 불수용
- 2018. 12 민원인 사망
- 2019. 5. 28 민원 재 접수
- 2019. 7. 2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현장 방문

• 조치결과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는 민원대상 구거중 대로X-X과 소로X-X 도로에 기 편입된 구간 및 도로 편입으로 발생하는 잔여지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후 상주시청에 매각.
- 상주시청은 용도폐지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2020년6월까지 매입 후 도로편입으로 발생하는 잔여지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수의매각 하기로
- 2019. 7. 24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작성



(2018. 10. 15. 현장 확인)



(2019.7 .2 .국민권익위원회 합동 현장 확인) (2019. 7. 24. 국민권익위원회조정서 작성)

민원 요지

- 동문동(북릉동)에서 OO자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장 뒤편에 OO장례식장, 쓰레기 소각장, 청소차량, 사무실 등이 있어 왕래가 많은 도로경계지점에 진입차와 반대편에서 나오는 차량이 충돌사고 위험이 많으니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을 설치하여 위험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건설과 도로보수 담당자 *** 협의
 - 과속방지턱은 주변의 과다 설치와 교통 흐름의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
가상 방지턱을 우선 설치 후 차후 필요시 과속방지턱 설치
 - 교통사고 방지차원에서 반사경 설치 협의
- ※2019. 6. 20 설치완료.

민원 요지

- 냉림동 일원에 건축하는 북천 000 아파트 신축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고자 오수 맨홀 펌프장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기간이 지났음에도 준공되지 않은 채 도로를 교통통제(차단) 함으로써 이 도로를 이용 시내로 통하는 OO 리더스 주민 등은 좌회전을 할 수 없어 상산교 사거리 까지 1km 이상을 가서 U턴을 다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상하수도 사업소장과 협의
- 북천 000 아파트 신축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냉림동 오수 맨홀 펌프장 공사로
- OO 리더스파크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사장 옆으로 임시도로를 만들어 통행 하도록 조치 (2019. 6. 18)



■ 민원 요지

- 낙동면 장천로 XX-XX 본인 집 진입로가 비포장도로로 폭이 좁은 상태이나 진입로를 통하여 경작하는 윗부분 농로는 확포장 되어 있어 진입로 확포장을 국민신문고, 상주시 낙동면에 진정 건의를 수차례 하였으나 사유지가 편입된 비 법정 도로에 대한 맹지에 토지를 매입 통행로 확보는 기존 토지 무상사용 승낙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입 용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함. 진입도로가 좁고 비포장 상태로 사료차량 등이 진출입이 어렵고 사고발생 우려가 있으니 확·포장하여 주길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낙동면장 ***, 토목계장 *** 협의 후 2019. 6. 19 현장 확인 및 중재
- 민원인 진입로 운평리 XXX-X번지 소유주 *** 은 땅 침범으로 절대 지상포장 반대.
- 운평리 XXX-X번지 소유주 강용운 은 자산공사 토지 사용료 및 개인 측량비 포함 100만원 지불하고 약3평 편입 양도하는데 합의
- 낙동면 예산 편성 후 지상 통행로 확보 콘크리트포장 공사 예정.



■ 민원 요지

- 화북면 상오1리 XXX-X(1714m² 답) 소재에 농막. 그늘막. 평상을 설치하여 년중 2개월가량 평상임대 후 간이 경량철골조 시설에 평상 임시보관 장소로 활용 하고 있는데 화북면 이장 회의시 OO리장 으로부터 불법행위로 고발조치 된 상태입니다. 제방에 돌을 쌓고 시멘작업으로 6000만원 소요되었으며 가설건축물은 화북면에 허가되었으나 일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구제 및 지목변경 가능 여부 확인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민원토지과 농지팀장 ***, 건축허가팀장 ***, 화북면 농지담당 협의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 동법 제79조에 따라 제방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경량철골조(면적: 229m²)는 위반건축물로 철거 조치 후
- 농지 건축팀장과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도록 협의 안내

■ 민원 요지

- OO동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건립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나기 전인 2016년 1월 13일 토지소유주와 매매계약서를 작성 이후 부지매입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부지매입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 통장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개인감정으로 상주경찰서 고발하여 경찰. 검찰 조사결과 지방재정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가 경북도 감사실에 진정 시 감사계 에서 조사 후 담당부서인 새마을과 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 전액 환수 결정 통보를 받은바 이는 너무 과한 행정행위로 부당함.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접수. (2019. 7. 25)
 - 권익위법 제54조 (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 처리 이송
- 고충민원 (2CA-1907-598316) 청문실시 (2019. 8. 20)
- 관계자 대책회의 (2019. 8. 22.)
- 처리결과 :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상주시 동문동 인봉 17. 18통 마을회관 건립 부지매입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결정을 각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2019. 10. 28)
 - 경북 행정심판 위원회는 관계법령 지방제정법 제32조, 구 상주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에 의거 대법원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권고에서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점, 지급받은 보조금은 모두 그 목적에 따라 마을회관 부지매입에 사용된 점,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없는 점, 민원인이 보조금 관련 순서가 바뀌었을 뿐 절차만 준수하였더라면 당연히 보조금 교부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마을회관 보조금 환수는 부당 최종결정 (2019.12.23) 민원인 통보완료
 - 새마을 체육과 민원인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취소 통보 (2020. 1. 21.)

■ 민원 요지

- 공성면 소재 계사2동(2,036㎡) 화재로 인하여 계사를 이전 하여 평천리 XXXX번지에 2019.4. 28.허가로 신축 계사 공사 중 입니다 시청 건축과, 환경관리과 방문 결과 합법적인 절차에 허가인지 확인 300m이내 주택이 없고 천재지변인 경우 적법한 절차에 건축허가 되었다고 하나 가축법 사육제한 조례에 800m와 천재지변이 해당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허가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 후 허가 취소를 요청 합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건축과 건축허가 ***, 환경관리과 *** 협의.
-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조례 제4조(제한지역) 2항에 의거 주거 밀집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축사를 300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가축사육제한구역내 기존 배출시설 설치 허가 가능지역으로 이전은 가능 (신고면적은 2,036㎡ →2,028㎡축사면적감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축 (2019. 8. 16일 통보)

■ 민원 요지

- 낙동면에서 1일 50인 정도의 위탁급식을 하는 업체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미 시행지역인바 음식물 자가 처리 장소(물을 전. 담 등)가 없어 부득이 처리업체(경북 환경 예천군업체)에 위탁처리로 월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돼지 먹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50%를 인상 한다하니 영세업체로서 부담이 많은 실정이니 음식물 종량제 확대를 요청.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2012년도부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6개동과 일부 면지역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 낙동면 지역의 다량배출 사업장의 경우 위탁처리 토록 권고 하고 있음

- 위탁처리업체는 상주시에는 없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 먹이 사용이 불가 하여 처리 비용을 50% 정도 인상한 상태로
- 현재 차량과 인력이 부족하여 종량제 확대는 어려운 실정임
- 민원업체는 기운영하는 낙동강 먹거리촌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용기에 담아 배출 장소에 배출 수거토록 조치.

34

왕산공원 옆 피해목 제거 요청

민원 요지

- 집 옆에 생육하고 있는 감나무(3그루)가 크게 자라 창문을 가리고 있어 창문 테두리 등에 곰팡이가 피는 등 피해가 있으니 가지치기를 하여 조치 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산림녹지과 담당 *** 협의
- 왕산공원 내에 식재된 감나무로 나무제거 작업의 필요성이 부족한 상태로
- 차후 전정 작업이 있을시 제거 작업을 하기로 민원인과 협의
- 전정 제거 작업 완료 (2019. 10. 20)

35

식당 음식냄새와 소음방지 대책요구

민원 요지

- 2017년 민원 접수된 채 접수 건으로 앞집 음식점(샤브향)에서 고기 굽는 냄새와 손님들의 대화 및 소음으로 다툼이 다소 있었으며 부인이 우울증으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냄새와 소음으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동문동 총무팀장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팀장 *** 협의
- 가능한 한 민원인 자택과 통하는 문을 닫고 영업토록 하고
- 담장위에 플라스틱판 으로 차폐 막을 설치키로 합의 중재
- 차폐막 설치 완료 (2019. 10. 5.)

■ 민원 요지

- 낙동면 유곡리 XXX번지 집 건축에 따른 배수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논으로 하수 유입됨으로 인하여 경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조사 처리하여 주시길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민원토지과 개발행위 팀장 ***, *** 협의
-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경상측량(주)에 공사 중지 토록하고 배수로 재검토 및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중용

■ 민원 요지

- 만산동XX-X번지 소유주가 수년전부터 포장 사용하고 있는 동네 골목길을 자기 땅이라며 측량 후 철 대문을 설치 통행을 막고 있으니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개발지원과 시설지원팀장 *** 협의
- 고충민원 관계자대책 회의 및 현장 확인
 - 일시: 2019. 10. 7(월) 14:00
 - 참석자: 상주시의원 *** 북문동장외7명
 - 내용: 차단된 마을길(만산7길) 원상회복 방안 논의
 - 토지 시 매입 요청
 - 무상 임대 후 시에서 도로 개설논의
 - 통행금지 가처분 소송 등
- 민원 진정서 접수 (대표자 : 북문10통장 ***)
- 통행금지 가처분 소송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관계자 회의)



(현 장)

38

공장설치로 꽃감 가공업 피해예상 조치요

■ 민원 요지

- 외남면 청동로 XXX번지 (주)OOOOO (육상금속골조 구조재 제조업) 업체에서 공장 (부지3183㎡ 제조시설268㎡ 부대시설160)을 2019. 1. 22일 승인받아 신설하고 있는바 공장 바로 옆에서 수년전부터 꽃감 가공업을 하는 민원인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되니 적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 *** 협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2019년1월22일 조건부 승인 된 공장으로
- 민원인과 주)OOOOO 대표 *** 면담결과 공장과 꽃감 가공지역간 먼지 가림막을 설치하고
- 꽃감 가공철 에는 작업을 최소화 하면서 피해를 주지 않겠다 약속 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종료.

■ 민원 요지

- 도시계획도로(소로X-XX. 사랑어린이집~적십자병원) 개설공사를 상주시에서 2020년도에 발주 할 계획인바 개설도로에 접하는 남원동XX-X 본인자택과 붙어있는 남원동XX-XX 도로와 동일번지에 있던 XX-XX번지(11㎡ 상주시) 자투리땅을 매입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도로편입부지 보상 시 누락된 나무3그루도 지장물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도시과 도시개발 *** 협의
- 자투리땅에 누락된 나무32그루는 재 감정 보상하고
- 도로 용폐 후 회계과 이관하여 매입 가능토록 조치

■ 민원 요지

- 외답 삼거리를 지나 한국도로공사 상주시사와 근접한 상주 OO아파트 편도 2차선 비보호 차선을 진입하고자 할 때 진입구간에 가로등이 없이 어두운 상태며 영남제일로 OO초등학교 인근 국도가 굽어 있는 상태로 통과 차량이 전속력으로 달려와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대단히 많으니 가로등과 반사경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건설과 도로보수팀장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 협의 후 현장 확인 결과
-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여 2019. 12. 4. 반사경 설치 완료하고
- 가로등은 2020년도에 설치기로 합의 종결.



41

태양광 설치 허가 조속해결

민원 요지

- 몸이 아파서 (호흡기 장애3급)농사를 지을 수 없어 낙동면 장곡리 XXX번지(4,212m²)에 발전허가를 받아 2019.11.21.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함에 있어 해당부서에서 인근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바 허가가 불가능한지 시공업자와 기계약 등으로 빠른 시일 내 협의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심판 등 할 예정임)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민원토지과 개발행위 팀장 *** 협의
- 낙동면 장곡리 태양광 발전사업 (주)OOOOO 2019. 11.21. 개발행위 허가 신청
-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공사반대 민원진정서 (3회) 제출
- 도시계획 심의 분과 위원회 의뢰 (도시과) 2020년 1월중 결과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을 통보.

■ 민원 요지

- 상주시 성동동 소로(X-XX). OO식당-기차길) 확장포장공사를 2010년~2011년도에 걸쳐 시행하면서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성동동 XXX-XX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아 미 보상 토지 구간을 제외하고 사업을 마무리함으로 인하여 약10년간 차량의 통행이 불가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골목길에서 억지로 차량을 되돌려 가는 등 불편이 많으니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 담당 *** 협의
- 소로(X-XXX)호선의 잔여구간 개설에 대한 사업비를 2020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감정 평가 후 편입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 실시
- 보상 미 협의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 신청 등 행정절차 추진 계획임을 통보.

■ 민원 요지

- 상주시 서곡동 XXX-X 번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쓰레기 배출 장소는 마을회관 본인 주택과 경계지점으로 본인 저온창고 출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양이 등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이 예상되니 다른 장소에 옮겨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동성동 주민복지담당 *** 협의
- 마을회의를 3차례 거쳐 주민80%이상이 쓰레기 배출장소 및 웬스 설치를 희망 하며
- 민원인의 주 출입로는 마을회관 옆(서곡동XXX-X) 민원인 소유의 주택 출입로가 있으며
- 쓰레기 배출로 인한 악취는 미미 한 것으로 판단 개인1명이 반대하여 마을 전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각하 처리 종료함.

6. 상담민원 처리 세부내역

1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 민원 요지

- 지적장애(자폐아) 1급인 자가 상주시에는 생활시설 2곳이 정원초과로 안동시 생활시설에 입소되어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으니 상주에 입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사회복지과 장애복지담당 *** 가족복지과 아동복지 팀장 *** 협의
- 상주시에 2곳의 재활원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으로 (희망재활원 44명, 행복재활원 16명) 정원초과 상태로 수용이 불가능하여
- 희망과 사람 재활원(중증 1~2급)이 상반기에 개소예정 으로 재활원과 협의토록 안내.

2

농산물 택배 배송 정지로 불편함 해소

■ 민원 요지

- 낙동면 용포리는 OO택배와 계약체결로 농산물 택배 배송을 하였으나 2018년12월 말부터 OO택배에서 택배배송 정지로 농산물 택배 판매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며 본인은 고령 차량미보유로 상주시내까지 운반이 어렵고 타 택배회사는 지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여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치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유통마케팅과 유통팀장 ***, *** 협의
- 2019년1월10일 OO택배 소장면담 2개 택배 폐업으로 경제적인 적자와 시간적인 부족으로 상주시 5개면 오지 지역은 택배 접수가 불가능하여
 - 대책방안으로
 - 새마을지도자 와 이장 협의하여 중소택배 선정
 - 마을자체 협의하여 택배물량을 주2회 자체적으로 운반 대책강구 민원인 통보.
- ※ 새마을 지도자가 주2회 마을 택배 수집 배송토록 합의
(특수교통수단운영 담당자 *** 실태파악 근본적인 대책 강구토록 권고함.)

■ 민원 요지

- 민원인 부친이 2살 때 돌아가셨고 7대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 조부(***) 부친(***) 앞으로 된 토지를 알 수 없으며 20년전 국도3호선 도로 확장시 보상금 수령하라는 전화를 받은적이 있는바 이제 기억이나 보상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하여 주기 바람(토지 소재지가 외서면으로 기억)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민원토지와 가족관계 팀장 ***, 지적계 *** 협의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각종서류 확인 결과 외서면 소재 토지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 중동면 오상리 XXX번지 506㎡ 토지(임야)는 조부(***) 명의 확인하여 상속 가능 확인 통보 (2019.1.10).

■ 민원 요지

- 사벌면 매호리 XXX번지 대지 301㎡ 은 민원인의 부친소유인데 스레트 지붕개량을 위하여 사벌면에서 확인결과 타인2명이 등재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 수정하여 지붕 개량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서류 확인결과 민원인의 부친 *** 1인만 등재 되어 있으며
- 사벌면 복지팀장 스레트 지붕개량사업 담당 *** 확인결과 2019년 스레트 지붕개량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중으로 신청토록 전화통지(2019.2.25).

민원 요지

-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XX-X (과 1311㎡), XX-X(과959㎡), XX-X(과426㎡), XX-X(답357㎡), 도합4필지(3057㎡),를 구입 경작함에 한번지로 합병 가능여부, 및 바로 옆(선상지방도) 자투리땅 승곡리 XX-X (답156㎡),를 매입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건설과. 민원토지과 담당자 협의결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89조와 관련하여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고 토지변경 등기촉탁을 의뢰 (2019.2.26.) 낙동면 승곡리 XX-X번지(3057㎡) 과수로 합병조치완료.
- 도로부지 공사 후 자투리땅(답156㎡)는 60%가 점도구역으로 매입 점용허가 등이 불가능함을 민원인에게 통보(2019.3.4.).

민원 요지

- 저희 집 본적은 상주시 냉림동 XXX-X 번지 제적부상 동래정씨로 알고 선대 때 부터 사용하여 오던 중 큰아들 결혼문제로 본을 확인 중 선산 무을 오가2동 XXX번지에 본적을 두고 시사를 같이 모시던 8촌 (***)이 본관은 연일정으로 사용 하는바 본관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민원토지과 가족관계 팀장 *** 협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각종서류 확인결과 조상때 부터 동래정씨이므로 본관 수정이 불가능함을 통보 종결.

■ 민원 요지

-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산X번지 (임야)83.702㎡ 나각산 일대에 상주에서 실시한 등산로 및 산책로 공사(2009.10~2010.7)로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재산세 감면이 없으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납세자보호관 *** 협의
-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제2항 및 제3항 1호에 의거 민원인은 구잠리 산X번지 (임야)83.702㎡에 대한 등산로 및 산책로 공사는 사용승낙서에 의해 진행 되었으며
- 2018년 재산세105.270원으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비례보상 가능 통보 하였으나
- 소액으로 신청포기 종료

■ 민원 요지

- 2016년 1월 30일 화동소재 OOOO 식당을 민원인 나가고 싶을 때 까지 있기로 하고 월세로 입주하여 식당을 운영 하던 중 보증금등의 문제로 식당을 비워 달라고 하여 임대차 보호법으로 소송 중에 있는바 이 식당은 법인으로 등록된 보조사업 직판장으로 임대가 불가능 함에도 임대를 하는 등의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 관련법에 의거 적정 조치를 하여 주기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 협의
- 민원인과 협의 해결 방안 강구중
- 보증금 관계로 상주지방법원에 소송 진행 중
-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감사계 진정
- 경찰서 지능 수사팀에서 수사 중 사건으로 종결 (2019. 8월)

■ 민원 요지

- 동문동(복룡동) X통·X통 에는 아직까지 노인정이 없어 동민들로 부터 원성이 자자하여 시의원 등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시내 통에는 읍·면과 달리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바 노인회관 부지로 복룡동XXX(103평)를 매입 가능한지? 노인정을 건립 할 수 있는지 등을 알려 주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동지역 관내에 노인정을 건축할 경우 새마을과 자체지침에 따라 3000만원 지원 경북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어 조례 제정 준비 중이며
- 등기부상 소유자가 2인(1/2씩)으로 1인은 승낙하나 다른1인은 사망 하였으므로 상속 등을 통하여 이전이 되어야 가능함을 통보.

■ 민원 요지

- 상주시 소재 000 뒷길 하수도 시설 공사(시공사 00토건)를 시행하면서 도로부분 되메우기 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4월23일 20:50경 지나가던 차량(본인은 동승)이 빠져 머리, 목, 등 을 다쳐 구미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시공자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병원비 휴업손해 등의 논의가 없이 거의 방치 해두고 있으니 상주시에서 발주한 공사이니 적극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시설팀장 *** 협의
- 냉림동 오수맨홀 펌프장 설치공사로 (2018.05.24 ~ 2019.05.10 00토건)
- 직접적인 공사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보험은 불가
- 시공사 관계자와 보상협의 중재 (2019. 5. 9 합의종결)

■ 민원 요지

- 남성동XX-XX(대) 155m² 토지소유주로 건축물 노후화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집 앞에 도로사용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남성동XX-XX 토지소유주가 처음에는 도로용폐에 승인 하였으나 현재 반대하는 입장으로 집 앞도로 기능이 상실되고 이용이 없으므로 집 앞 도로 용폐 후 매각을 요청 합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자 *** 협의 후
- 2019.7. 10. 건설과 도시과, 교통에너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 관계자회의실시.
- 기존 맨홀 오수관을 사용 하고 있으며
- 향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 계획으로 매각은 불가 통보.

■ 민원 요지

- 자동차(경북X거XXXX)에 대하여 자동차상사(대표***) 운영(88.9.20.~98.2.1.) 당시인 1989.9.11. 이루어진 자동차 매매건에 당시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차량의 행방을 알수 없으나 명의만 당시 대표인 본인에게 이전된바 2008년2월까지 차량등록부에 압류만 되도록 방치한 것은 공무원 직무유기이고 5년간의 시효소멸기간이 지났으니 부과 취소하여 주기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환경관리과 수계관리 팀장 ***, 담당자 *** 협의
- 환경개선 부담금
 - 금액 : 930,010원
 - 기간 : 99. 8. 9.~2008. 7월 (세정팀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제출)

- 시효소멸에 따른 부과취소

- 99. 8. 9. 이전등록(***→ ***)이 본인 인정 하에 정당하게 이루어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처리지침 (국세 징수법 제28조 시효중단과 정지되는 경우) 의거 정당하게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시효소멸에 따른 부과취소는 불가 통지함.

13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부과 구제 요청

민원 요지

- 화서면 봉촌리 XXX-X번지(전)소재 농사를 짓는데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지하수관정을 뚫는데 물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 관정 공사시 자진 신고사항 인줄 몰라 미신고하여 주변인의 고발로 과태료가 발생 하였습니다 구제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환경관리과 수계관리 팀장 ***, *** 협의
-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규정을 위반하였으나
- 본인의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사항을 고의가 아닌 미인지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 같은 법 제39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200만원 중 50%를 경감 조치.

14

수도요금 조정 요청

민원 요지

- 평상시 수도요금은 매월 3000원~5000원 정도 부과되었으나 2019년 7월 당월 검침시 사용량 1100톤 사용 확인 .수도요금이 200여만원이 부과 예상되어 2019년 7월16일 누수탐지공사 결과 연결부위가 빠져 누수된 것으로 확인. 2018년 마당수도 설치공사 하였으나 이때까지 이상 없었으므로 공사누수와 상관없다는 입장으로 수도요금 조정 요청 합니다.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 담당 *** 협의
- 정기검침 시 누수를 발견하여 수리토록 조치하고
- 현재 누수 수리가 완료됨에 따라 수용가의 누수감면 신청으로 인한 누수 요금 적용함이 타당하여
- 1165톤을 본인부담 500톤으로 조정하고 2개월(7.8월) 분산 경감적용 하여 민원인 통보 완료

15

벌 변에 의한 불편

민원 요지

- 인근에 거주하는 양봉업자가 200여통 벌을 사육함으로 인하여 벌 쏘임 위험과 벌 변으로 인하여 차량 빨래 세탁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으니 조치요망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은척면 무릉리 XXX(답)에 190여 통 벌을 고정으로 사육함으로 인하여 벌 변, 벌 쏘임 등 피해를 주고 있으나
- 거리, 사육제한등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양봉업자와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협의 강구토록 종용.
- ※ 2019. 8. 2. 양봉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후 시행령 제정 중으로 추후 처리방안 강구

16

사망에 따른 토지매매 확인 요청

민원 요지

- 서곡동XXX-X번지 (대지820㎡) ***의 소유 토지였으나 2017. 9. 4. *** 소유권 이 전되었으나 원 소유 *** 사망시점과 소유권 이전에 의혹을 갖고 있으며 토지매매 절차 확인 요청합니다.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민원토지과 지적담당 ***, 가족관계등록 *** 협의
- 상주시 서곡동 XXX-X번지 (대지820㎡)은 2017. 9. 4. *** 소유권 이전.
- 서곡동XXX번지 (대지532㎡)은 2017. 11. 24. 부로 서곡동 XXX-X번지와 합병 말소되었으며
- 원소유자 *** 2018. 1. 27. 사망으로 사망 후 매매가 아니며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 관계 확인 이후 의문시 등기를 관장하는 법원에서 확인 안내

17

영구 임대 아파트 퇴거조치 구제요청

민원 요지

- O주공 임대아파트 거주하면서 병원 입원과 출타로 아파트 임대 사이트에 올려 재 임대하여 2019년 9월말 까지 LH공사 관리사무소부터 퇴거조치로 당장 오갈 때가 없으니 구제 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LH공사 관리 사무소장 협의
- 민원인은 2017년부터 거주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재 임대를 몇 차례 한바 아파트 규약에 의거 퇴거조치가 합당하여 기각.

18

근로장려금 지급 조사 요청

민원 요지

- 2018년~2019년 근로 장려금을 수령함에 있어 노인일자리 사업을 같은 기간 같이 한 사람은 94만원을 수령하였는데 본인은 40만원을 수령 세무서 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상주시에서 수령 금액 통보에 착오가 있어 소액수령 되었으니 조사하여 정상적 지급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본인수령액(2018. 3. 5~2018. 11. 30) 243만원 세무서 통보 액 100만원]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가족복지과노인복지 담당 ***, *** 협의
- 당초 근로 장려금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액을 인력개발원에서 일괄 세무서로 통보
- 2018년도부터 자치단체에서 통보토록 절차 변경
- 업무담당자의 이동으로 이를 통보치 아니하여 시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재작성 변경 통보 (2018년 201명)
- 문정임 차액 분 54만원 추가 수령

19

향토 문화재(석불입상) 자료 찾기

■ 민원 요지

- 화서면 상용리. 상현리에 각각 석불입상이 있었으나 상현리 소재불상은 보존하고 있으나 상용리 불상은 1980년 초에 도난(추정)된 것으로 2011년경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호암미술관 전정에서 발견된바 2011년 3월경 화서면장. 상용리 노인회장. 리장 이 석불입상 찾아달라고 상주시에 민원제기 상주시에서는 호암미술관에 입상 소장 경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서류 추진과정 일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장 *** 담당 *** 협의
 - 원위치 : 화서면 상용리 XXX번지
 - 현위치 : OO미술관 (경기도 용인시) 전정
 - 사건경위 : 1980년대 초 원위치에서 도난 (추정)
 - 2011년 3월3일 화서면장 및 상용리 노인회장과 이장이 입상을 찾아 달라고 상주시에 민원제기
 - 2011년 3월3일 상주시에서 삼성문화재단(***)에 OO미술관이 입상을 소장하게 된 경위자료제출 요구(미 회신)
- ☞ 시청문화예술과. 상백회와 협조 지속적으로 반환 연계활동

■ 민원 요지

- 게이트볼 회원이 400명으로 변변한 전천후 게이트볼 장 없이 수년전에 지은 하우스 형태의 복룡동 체육센터가 있을 뿐으로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2019년 화서면, 화북면, 모동면, 낙동면 4개소에 1곳 2억으로 8억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 이고 2020년에는 4곳을 할 계획이나 법적구비요건이 맞는 곳이 2곳뿐이라 2곳만 개방해놓은 상태인바 지역분회장과 협의결과 이용이 저조한 읍 .면 구장사업비를 시 중앙에 전천후 구장을 지을수 있도록 시에서 처리 하여 주기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새마을체육과 체육팀장 *** 협의
- 읍.면.동 구장 지붕사업은 기 추진하는 대로 행하고 기존 체육센터 구장은 건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철거가 곤란하고 지을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
- 전액 20여억원 사업비를 시비로 확보하기는 곤란하므로 장기계획을 세워 국비예산 확보 등 통한 연차적 추진이 타당 할 것으로 민원인과 협의 종료.

■ 민원 요지

- 본인 아들소유(이창희) 인봉동 XX-X 3층 건물은 2019년 11월 까지는 아리랑식당 등 2가구의 영업 점포와 일반가정집이 혼재해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6가구가 살고 있는 다주택 가구인바 다른 가정집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으니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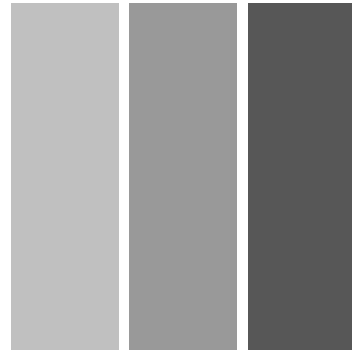
- 민원토지과 상수도담당 *** 협의
- 2019년 12월까지의 상수도 부과 업종이 겸업 종으로
- 2020년 1월부터 가정업종으로 변경부과 계획 통보.

 민원 요지

- 의정부시에서 2016. 4. 21. 상주시 화동면 팔음로 XXXX 번지로 귀촌하여 2016. 6. 17.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살고 있으며 이전에 살던 집 매매 관계로 2018. 10. 22. 경기도 의정부시로 전출 당일 재 전입 현재까지 살고 있음에도 전출하였다가 재 전입 하였다고 전입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됨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미래전략추진단 인구정책팀 *** 협의
- 농업 경영체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사실 관계 확인
- 2016. 6. 17 ~2018. 10. 22. 기간에 해당됨으로 인구증가 시책 신청서 제출 지급 완료.



제도 홍보

- I. 옴부즈맨 활동
- II. 옴부즈맨 홍보
- III. 언론보도 등

상주시 옴부즈맨

제 도 홍 보

I. 옴부즈맨 활동

1 2018년 상주시 운영성과 보고 및 공표

- 근 거 :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시 기 : 2019. 2.
- 대 상 : 상주시장, 상주시의회, 시민
- 방 법 : 책자 제작(250부), 시 홈페이지 게재.

2 타 지역 옴부즈맨 운영 등에 벤치마킹 방문

- 일 시 : 2019. 12. 10.(화)
- 장 소 : 상주시 옴부즈맨 실
- 인 원 : 포항시/구미시 감사담당관실 민원조사팀장외 3명
- 벤치마킹 사항
 - 옴부즈맨 도입 과정 및 운영 효과
 - 옴부즈맨 모집(자격요건) 및 대우에 관한 사항 등.



3

지방 옴부즈맨 워크숍 참석 및 사례발표

- ▣ 일 시 : 2019. 4. 24 ~ 4. 25. (1박2일)/ 7. 19(금) / 10. 31.(목)
- ▣ 장 소 : 르윈 호텔(전주시)/한국프레스센터(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 ▣ 참 석 : 강석도 옴부즈맨, 옴부즈맨 지원담당자.
- ▣ 내 용 : 고충민원 처리 조정기법 및 옴부즈맨 운영교육
 - 고충 처리국 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에 대해 분임별 해결방안 모색
 - 옴부즈맨 기관 운영 현황 및 고충민원 처리 사례 발표 등





(상담 민원 접수 및 상담)



(고충민원 관계자 회의)



(현장 확인)



(현장 확인)



(7. 2. 국민권의 위원회 합동 현장 확인)



(8. 27. 국민권익위원회 상주시 이동 신문고 현장 출동)

II. 읍부즈맨 제도 홍보

1. 읍부즈맨 안내 배너 상시 안내 및 홍보활동

— 장 소 : 시청 민원봉사와 출입문 및 읍부즈맨 실



—. 홍보 활동 (농업 기술센터)



2. 안내 포스터 및 팸플렛 (10,000부)

기존 행정구제 제도와의 비교

구분	음부즈맨	행정심판	행정소송
목적	위법·부당한 국가나 소극적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불만을 받은 경우 권리구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
상대	비정당제도	정당제도	정당제도
기간	제한없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범위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부작위, 불완전행위 등 포괄적	행정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행정의 적법성 유무 (계량적 입법행위 포함)
접근성	접근성 높음	행정소송보다는 접근이 용이	접근성이 매우 어려움
비용	무료	행정소송보다는 경제적 부담은 작은 편	경제적 부담이 높음

상주, 새로운 천년의 중심에 서다
상주시 음부즈맨이 함께 합니다!

**행정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상주시 음부즈맨으로 연락주세요!**

상주시 음부즈맨실 안내
☎ 대표전화 : (054) 537-7684, 7685
팩 스 : (054) 537-6168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시청사 본관 3F

상주시
SANGJU CITY

상주시 음부즈맨과 상담하세요!!
시민의 고통을 해결해 드립니다!

고충민원 처리
행정제도 개선
시정감찰

상주시 음부즈맨

음부즈맨의 기능

- 시민권리 구제 기능
- 행정의 민주적 통제 기능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기능
- 행정개혁 기능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기능

상주시 음부즈맨이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민원
-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으로 인한 민원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원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만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상주시 음부즈맨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음부즈맨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음부즈맨 소개

음부즈맨이란 무엇인가요?

음부즈맨(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통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입니다.

상주시 음부즈맨 구성·운영

- 음부즈맨 수 : 1명
- 임기 및 신분 : 2년(1회 연임 가능), 비상임 명예직
- 직무
 -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 처리
 -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 법적근거 : 상주시 음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음부즈맨은 시 직제와 별개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음부즈맨 운영체계

고충민원 해결

고충민원이란 무엇인가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만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 신청

시민은 누구나 상주시 음부즈맨실을 방문하여 음부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위치 : 시청사 본관 3F
- 전화번호 : (054) 537-7684, 7685
- 운영시간 : 월 ~ 금요일, 10:00 ~ 16:00

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 신청	음부즈맨실 방문 신청
민원 분류	기재사항 및 내용 검토, 단순민원 부서 이첩
조사여부 결정	신청인 및 소관부서에 조사 개시 통보
조사 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 처리
조사결과 통지	신청인, 소관부서에 통지

Ⅲ. 언론 보도 등

1. 언론 홍보

대구광역시일보

2019년 03월 04일 월요일 010면 경북

“상주시 옴부즈맨과 상담 하세요”

시민 고충 해소, 불합리한 제도 개선

상주시의 옴부즈맨이 시민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시민의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가 올 2월 발간한 '2018년 옴부즈맨 운영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옴부즈맨은 도로, 건축, 농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62건을 접수해 처리했거나 처리 중이다. 내용을 보면 27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을, 24건은 조정·중재, 8건

은 각하, 3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강석도 옴부즈맨은 “올해에는 보다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공정한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옴부즈맨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옴부즈맨의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시정해 시민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기자

경북일보

2019년 03월 04일 월요일
009면 지역종합

상주 행정감찰관 ‘옴부즈맨’ 고충 해소 톡톡

제도 시정 권고 등 권익 보호

상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맨’이 시민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시민 권리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가 지난달 발간한 ‘2018년 옴부즈맨 운영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옴부즈맨은 도로와 건축, 농지 등 다양한 분야에 총 62건을 접수해 이중 27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24건은 조정 및 중재, 8건은 각하, 3건은 검토를 진행 중이다.

황천모 시장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옴부즈맨들의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시정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강석도 옴부즈맨은 “2019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고충 민원 해결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공정한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옴부즈맨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는 2016년 8월 이 제도를 도입해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로 3년째 운영하고 있다.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2019 상주시 옴부즈맨 운영

- 고충민원, 옴부즈맨이 해결해 드립니다 -

• 옴부즈맨(Ombudsman)이란 ?

☞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

• 운영시간: 월 ~ 금요일, 10:00 ~ 16:00

• 사무실 위치: 시청사 본관 3층

• 문의처: 옴부즈맨실(☎ 054-537-7684, 7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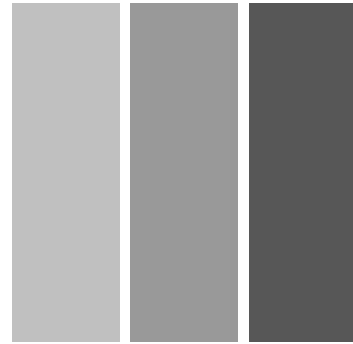
2. 상주시에는 옴부즈맨이 있어요 (상주사랑 UCC 공모전 수상작)

[상주사랑 UCC 공모전 장려상 수상작] 상주시에는 옴부즈맨이 있어요!



youtube.com을(를) 전체 화면으로 보시겠습니까? 종료하려면 <Esc> 키를 누르세요.

한 번 사용(A) 이 사이트의 옵션(O) X



부 록

- I. 연혁
- II. 상주시 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조례
- III. 상주시 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상주시 옴부즈맨

부 록

I. 연혁

일 시	내 용
2015.10.02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공포(의원입법)
2016.02.29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
2016.05.18	상주시 옴부즈맨 추천위원회 개최(면접심사) ☞개최결과 : 상주시옴부즈맨추천대상자선정(강 석 도)
2016.06.24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
2016.07.11	옴부즈맨 위촉 식(시민의 방)
2016.07.18	옴부즈맨 직무수행 개시
2016.08.01	옴부즈맨 현판식(종합민원실 입구)
2016.10.02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6.12.31	2016년 고충민원 총 38건 처리
2017.12.31	2017년 고충민원 총 54건 처리
2018.01.02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옴부즈맨지원)
2018.07.11	2대 옴부즈맨 재위촉 (강석도)
2018.12.31	2018년 고충민원 총 62건 처리
2019.12.31	2019년 고충민원 총 65건 처리

II.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0.02 조례 제10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옴부즈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임·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시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맨 기능·구성 등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맨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② 옴부즈맨은 시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맨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은 새로운 옴부즈맨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맨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4조(기능) ①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2. 옴부즈맨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중재

3.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정·중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맨에게 요구한 사건의 조사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옴부즈맨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진행중이거나 결정된 사항

제5조 (직무 관할) 옴부즈맨이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제6조(옴부즈맨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맨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검직금지) 옴부즈맨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정당과 관련된 직위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9조(옴부즈맨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맨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맨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맨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시민은 옴부즈맨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맨과 국가옴부즈맨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옴부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맨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맨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수탁기관의 장은 옴부즈맨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

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맨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맨은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맨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맨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맨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7조(합의의 권고) 옴부즈맨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이하 “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맨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단체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단체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군·구·읍·면·자치위원회의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맨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옴부즈맨으로부터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단체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의) 단체장은 옴부즈맨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맨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24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맨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맨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27조(사무국) ① 옴부즈맨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은 옴부즈맨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② 옴부즈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지원) 시장은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014호, 201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Ⅲ.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6.02.29 규칙 제5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옴부즈맨(이하"옴부즈맨"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추천위원회 구성) ①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옴부즈맨의 구성을 위하여 옴부즈맨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1. 부시장, 인사업무담당국장
2. 상주시의회 의원 2명
3. 변호사, 학교장(초·중·고),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중 3명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인이 구술하는 고충민원내용을 듣고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맨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맨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맨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3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인정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조사 실시의 통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소관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고충민원조사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처리 지연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조사 제외 등 통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조사 제외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옴부즈맨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는 이후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의 관계 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은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신분증의 휴대 등) 옴부즈맨 사무국의 직원이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증명서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조사 결과의 통보) 조례 제21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고충민원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합의의 권고) 조례 제17조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맨이 이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등 통지)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조례 제19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 권고(의견표명)서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지한다.

제15조(권고, 의견표명의 재심의) 시는 조례 제18조 및 조례 제19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 표명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옴부즈맨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이 경우 옴부즈맨은 해당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6조(처리결과의 통보) 조례 제22조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7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① 옴부즈맨은 조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인 시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 및 소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매년 12월말까지의 운영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운영상황의 공표는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9조(사무기구 설치 등) 조례 제27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기구는 공보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두고 사무의 운용은 옴부즈맨이 관할한다.
2. 사무기구에는 2명 이내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기구 직원은 옴부즈맨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사무를 지원한다.

제20조(공인의 사용) ① 옴부즈맨이 발송·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새겨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맨 공인의 사용은 「상주시 공인 조례」 및 「상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규칙제543호, 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옴부즈맨이 함께 합니다!

행정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상주시 옴부즈맨으로 연락주세요

상주시 옴부즈맨실 안내

대표전화 : 054)537-7684, 7685

팩 스 : 054)537-6168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시청사 3층